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가단1233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B
소송대리인 C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1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5. 13. 접수 제805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는 2016. 6. 24. B에게 1,000만 원을, 만기일은 2021. 6. 24.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20. 6. 2.부터 약정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20. 6. 2. 현재 연체원리금 합계액은 9,236,136원이다.

다. 그런데 B은 2020. 5. 12.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20. 5. 1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주식회사 A는 2020. 6.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B은 2020. 7. 29.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71764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21. 5. 2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22. 2. 15.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A의 채권도 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지 않았다.

바. 이 법원은 2021. 11. 3. 개인회생채무자 B을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이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는데, 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 행사를 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된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된 때에는 적법한 수계 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주식회사 A가 채권자취소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개인회생채무자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음에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1. 5. 24.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5항) 이 사건 소를 부인의 소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별지 목록

1. 1동의건물의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54.62㎡

2층 162.62㎡

3층 162.62㎡

4층 162.62㎡

5층 161.03㎡

옥탑1층 15.34㎡(연면적 제외)

2. 전유부분의건물의표시

건물번호 :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37.81㎡

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강동구

대 380.2㎡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380.2분의 22.91

위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 끝.

